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25770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38,291,998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2,969,960원 및 그 중 117,393,702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5,892,21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963,213원 및 그 중 15,718,713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7,075,267원 및 그 중 45,960,407원에 대하여 2022. 12.

-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근보증한도액
①	110,000,000원	2013.01.14.	2017.09.06.	132,000,000원
②	190,000,000원	2016.07.08.	2017.09.06.	209,000,000원
③	80,000,000원	2013.07.08.	2017.09.04.	96,000,000원
④	90,000,000원	2013.07.19.	2018.07.13.	21,600,000원
⑤	300,000,000원	2009.07.24.	2018.07.13.	390,000,000원

나. D은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2. 12. 8. 기준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잔액	연체이자	합 계	연체 이율
①	77,000,000	4,143,232	57,148,766	138,291,998	15%
②	117,393,702	10,021,643	125,554,615	252,969,960	15%
③	70,000,000	3,938,788	51,953,424	125,892,212	15%
④	15,718,713	3,166,039	11,078,461	29,963,213	15%
⑤	45,960,407	8,722,218	32,392,642	87,075,267	15%

다. D은 2017. 9. 29.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11. 2.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각 대출원리금 중 66%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4%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법인회생계획을 제출하여 2018. 7. 9.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4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보증한도액인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138,291,998원 및 그 중 원금 77,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② 보증한도액인 20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252,969,960원 및 그 중 원금 117,393,702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③ 보증한도액인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125,892,212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④ 보증한도액인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29,963,213원 및 그 중 원금 15,718,713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⑤ 보증한도액인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87,075,267원 및 그 중 원금 45,960,407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D의 회생계획에 따라 대출금채무 중 66%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채무자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66%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4%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법인회생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의 가치를 가져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만큼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실질적인 만족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D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증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